

대학원 임상영양사과정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임상영양사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은 임상영양사의 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인 대학원을 의미한다.

② 임상영양사과정은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에서 임상영양사 양성을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③ 전공전임교수는 우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임교수로서,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계획 및 운영하며, 학사지도, 학생평가, 예산 및 인력관리 등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전반을 책임, 관리하는 교수를 의미한다.

④ 실습지도겸임교수는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실습협약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임상영양사로서 임상영양실습교과목에 적절한 실습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⑤ 실습협약기관은 임상영양실습 교과목 운영을 위해 우리 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기관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기관의 정원 및 지정일) 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교육생 정원은 5명이다.

②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최초지정일은 2012년 8월 27일이다.

제4조(교육목표)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목표는 전공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창의적 임상영양사를 양성하고, 사랑의 정신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윤리적 직업인을 양성하며, 협동적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통한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최소 4학기이며, 과정입학등록 이후 과정수료까지 4학기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은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이 제시한 임상영양사 표준교육과정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이수과목) ① 본 교육과정의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별표 3 따름)(개정 2021. 9. 27.)

구분	과목명	학점	
이론과목	필수	고급영양이론	3
	필수	병태생리학	3
	필수	임상영양치료(1, 2)	6
	필수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3
	필수	임상영양연구	3
실습과목	필수	임상영양실습	8(480시간)
계		26	

② 학기당 학점신청은 9학점 이하로 한다.

제7조(전공전임교수) ① 학생 정원 10명당 1명 이상의 전공전임교수를 임명하여야 하며, 전공전임교수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과정책임교수로 정한다.

② 전공전임교수는 반드시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전임교수 중 임명한다.

제8조(실습지도겸임교수) ① 제6조의 임상영양실습 과목의 교육을 위해 학생 정원 5명당 1

명 이상의 실습지도겸임교수를 둔다

② 실습지도겸임교수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의 임상경험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여야 하며, 임상영양사 국가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임상영양실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기에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실습지도겸임교수를 임명한다.

제9조(실습협약기관) ① 실습협약기관은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진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기관 차원의 협약을 맺어야 한다.

② 실습협약기관은 실습목표에 맞게 충분한 임상실무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 조직, 임상영양치료활동, 임상영양사 수 등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임상영양실습) ① 임상영양실습은 8학점, 480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실습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한다.

③ 최소 240시간 이상(4학점 이상)은 반드시 한국영양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과정입학기준)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입학기준은 영양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그 외 기준은 「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따른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 교육개시년도의 영양사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으로 운영한다.

제12조(입학전형) 전형자료는 면접고사, 구술고사, 대학 및 대학원 성적, 면학계획서를 활용한다.

제13조(학위수여 자격)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학위수여기준의 기본 원칙은 「대학원 학칙」 제37조를 따른다.

제14조(교육과정 수료) ① 대학원의 수료기준 및 졸업기준과는 다른 의미로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법적기준에 따른 최소 기준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 교육과정 수료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학 이후 2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자

2. 제6조제1항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 자

3. 취득한 전체 성적의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자

③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수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이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은 학위수여증서, 졸업증서와는 다른 종류의 과정수료에 대한 확인증이다.

제15조(제적)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학기별 평점평균이 연속 두 학기 각 75점 미만인 학생은 제적을 시킬 수 있다.

제16조(평가) ① 전공전임교수 책임 하에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통해 과정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구성되며, 외부평가는 보건복지부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 의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 다만, 외부평가 시에는 책정된 평가수수료경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교육의 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 자체평가위원회는 식품영양학과장 및 학과 내 교과목을 담당한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운영현황 보고) 매 학기마다 운영현황을 보건복지부 업무위탁기관인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 보고한다.

제18조(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본 내규는 소관부서의 내부결재와 소관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하기 이력과 같이 자체적으로 제정 및 관리하였던 내규이나, 「규정류 관리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자 기획위원회 및 교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위 시행일에 ‘규정류’로 제정되었음

<과거 개정 이력 및 부칙>

1. 이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내규는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2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